

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

『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』에 따라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3일

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 (직인생략)

1 선발개요

구분	계	4년대			전문대
		도내	서울	기타	
선발인원(명)	150	32	22	63	33
장학금 ¹⁾ 지급액(천원)	316,800	2,200			1,800

2 선발일정

- 접수기간 : ` 23. 7. 17.(월) ~ 7. 26.(수) 18시까지
 - 최종합격자 통보 : ` 23. 8. 21.(월) 예정
 - 공고게시 :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jcsf.or.kr)
 - 장학증서 우편발송 및 장학금 계좌지급 : ` 23. 8. 24.(수) 예정
- ※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

1) 수학을 장려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(생활)를 지원하는 장학금

3

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(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)의 재학생

※ 단, 기혼자 또는 만학도(1988. 12. 31. 이전 출생자),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

-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(백분위환산)이 90점 이상인 자

구분	평가 기준 학기
신입생	2023년 1학기 90점 이상
재학생	2022년 2학기과 2023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
복학생 및 편입생	2023년 1학기 90점 이상
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	2022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

-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

- 예·체능 특기자 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, 도내대회 1위 입상자

4

선발기준

- 평가항목

- 총 선발인원의 80% : 생활형편 50% + 학업성적 50% (+ 가산점)
- 총 선발인원의 20% :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% (+ 가산점)

가산점 항목(중복가능)	점수
소년·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(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)	0.3
장애인가정 (부모, 본인만 적용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0.3
국가유공자 가정 (고엽제 포함)	0.3
다자녀 가정 (3자녀 이상)	0.3
조손가정	0.3

- 선발제한사항

- 한 학교의 선발인원 : 총 선발인원 15%, 4년대는 20%로 제한 (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%의 경우, 학교당 선발인원에서 제외)
- 예·체능 특기자 : 전체인원의 10% 이내

-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※ 아래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: 이사회 심의 결정

- 생활형편 50% + 학업성적 50% : 1순위 생활형편, 2순위 학업성적
-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% : 1순위 가산점, 2순위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

5

선발제외

-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 미달자
-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자(농업인, 이·통장, 새마을 등)
- 직업학교, 원격대학(사이버대 및 방통대), 평생교육원 교육과정, 시간제 과정,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
-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
 - 4년제 대학 2회, 전문대 1회(4년제 학과 2회)
- 1세대 2명 지원 시 1명 선발(3자녀 이상 가정은 2명까지 선발)

6

신청방법

-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제출
 - ※ 예·체능 특기자의 경우, 정읍시 제2청사 2층 인재양성과 방문 접수
- 문의처 : 정읍시민장학재단 ☎ 063-539-5577

7

제출서류

- 기본(공통)서류
 1.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 【서식 1】
 2.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【서식 2】
 3. 성적증명서(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) 1부
 - ※ 성적증명서에 백분위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,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 - ※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 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,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.
 4. 재학증명서 1부
 5. 주민등록등본(정읍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) 1부
 -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 발급(거주기간 확인)
 - 부/모/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기준) 제출

6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

- 기간 : 2022년 7월 ~ 2023년 6월(정산분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1)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-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(자격득실확인서x)
2)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-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1명(부양자)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미납부자 1명(피부양자)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<i>* 부모가 모두 지역가입자(동일세대)인 경우,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</i>
3)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-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4)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기혼자 또는 만학도의 경우 -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5)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-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

※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,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

가입상태(변동사항)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

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기간(2022년 7월 ~ 2023년 6월)동안 자격 변동사항이

있었을 경우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둘 다 제출

7. 통장사본 1부(장학금 입금 계좌로 필히 부모 명의일 것)

○ 추가서류(해당자에 한함)

1. 예체능 특기자(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) : 증빙자료 1부

2. 복학생 및 편입생 : 학적부 1부

3.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

가. 3자녀 이상 가정, 한부모 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기준) 1부

나. 소년소녀 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기준)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 【서식 3】 1부

다. 장애인 가정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/모/본인만 적용) : 장애인 증명서 1부

라. 국가유공자 가정 :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

※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

마. 조손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기준)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(123456-3*****) 발급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(063-539-5577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